

---

**2021년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

**2021. 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목 차



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세부 지침 ..... 1

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 제출 ..... 4

[참고1] 자주 묻는 질문 (FAQ) ..... 6

[참고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트 안내 ..... 12

[참고3]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15

[참고4]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법령 ..... 17

# 1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세부 지침

### 1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2 교육내용 및 방법

※ 각 기관별로 아래 해당내용을 준수하여 교육 시행 및 결과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할 것

< '21년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관련 주요 변경 사항(2차) >

(~20년) 기존		('21년) 변경사항
민간 콘텐츠 인정	➤	복지부 제작 콘텐츠 + 복지부가 승인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콘텐츠
강사 자격 요건(권장 기준)	➤	복지부 강사 자격 요건(필수 기준)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 자체기준 인정
간소한 증빙자료 요건	➤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별도 콘텐츠 운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통합 (1시간 또는 2시간 분량)

-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교육 이수기준) '21.1.1.부터 '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
  - (콘텐츠 승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강의자료(영상)의 경우 신청서(붙임4) 작성 및 요청공문 시행 후 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통해 교육자료로 사용 가능
    - \* 신청서 작성 후 콘텐츠 인증요청 공문 시행 → 복지부/보장원 승인(공문)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학대예방사업부), 영상파일 제출을 위한 이메일은 공문 접수 후 안내 예정
  -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 (예외) 단,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 진행 가능(단, 이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사전협의 필요)
- (교육 콘텐츠) '21년도에는 교육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를 통일하여 2종류로 구성(1시간, 2시간)

- \*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 ②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 동영상 교육 이수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의 경우 1시간 또는 2시간 동영상 자료를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 공공부문 예방교육 대상자로서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에도 해당될 경우 총 2시간 이수가 필요하므로 공통기관용(2시간) 교육자료 이용 가능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예시 :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 (2시간 이수가 필요한 공통기관(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및 보건소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4 기타 사항

-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공직유관 단체에 교육 안내시 결과보고서 양식[붙임2] 자료를 송부하고, 복지부 위탁 교육 사이트 등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참고1]을 참고하되,
  - 기타 문의는 가급적 실적관리시스템(jedu.ncrc.or.kr)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이용할 것

문의 내용	구 분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및 탑재, 실적관리시스템상 실적입력 단위 신설 등 교육결과 제출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02-6283-0200)- 1번

## 1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항
- (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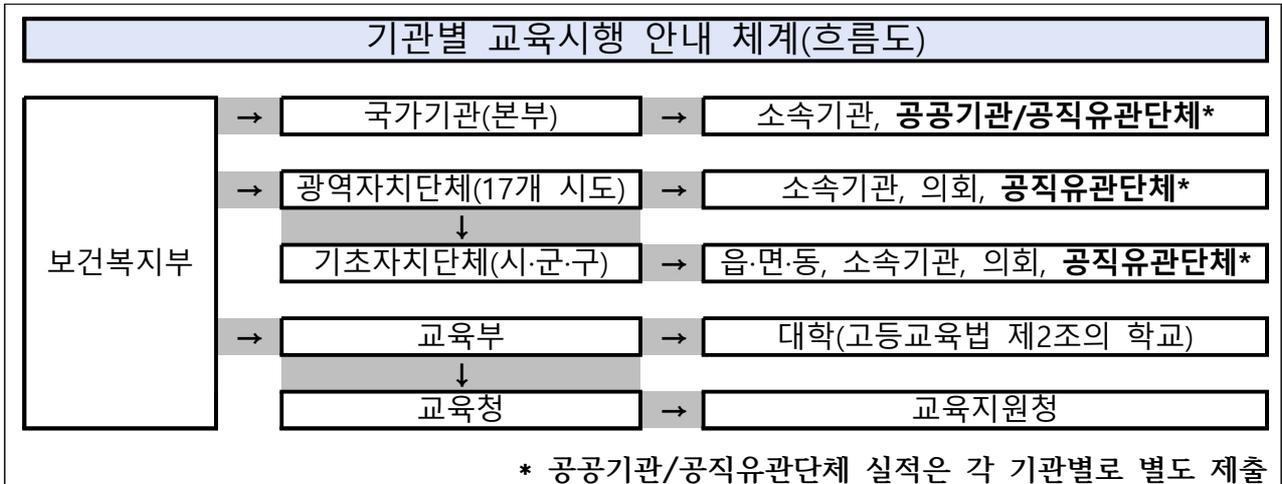
## 2 교육점검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 전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목록 및 관할 기관 : [붙임3]

## 3 교육시행 결과 제출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제출내용) 2021년도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 (제출기한) 2022년 1월 1일 ~ 2월 28일
  - \* 아동학대 예방교육 점검결과는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하반기 국회 보고
- (제출방법) [붙임2]에 기관별로 증빙자료 취합\* 및 실적정리 후, '221월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입력 진행
  - \* 증빙자료 내용은 교육방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붙임2] 확인 필요
  - (실적입력 내용)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 인원, 수료인원, 교육 방법, 파일첨부 ([붙임2]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④ 각 기관별 교육시행 및 교육실적 제출(시스템 입력) 안내



①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담당부서에서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교육시행 안내

※ (실적제출) 본부 실적은 각 기관별로 입력하고, 소속기관 실적의 경우 중앙단위(1차 소속기관)에서 산하 소속기관의 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입력

\* 다만, 경찰청은 시도지방경찰청, 우정사업본부는 시도지방우정청, 소방청은 시도소방본부에서 이하 기관의 모든 실적을 취합하여 입력

②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광역)는 관할 시·군·구(기초)에, 시·군·구는 관할 읍·면·동에 교육시행을 안내하고, 17개 시·도 및 시·군·구는 소속기관, 의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교육시행 안내

※ (실적제출) 17개 시·도는 자체 및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적을, 시·군·구는 자체 및 관할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적을 모두 통합하여 입력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 및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실적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숫자를 통합해 총 인원 및 교육 이수인원 등 입력

③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교육청에, 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시행 안내

※ (실적제출) 대학은 기관별로 교육실적을 입력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각각 자체 및 관할 직속기관의 교육실적을 모두 통합하여 입력

④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사, 부설 등 소속기관에 교육실시 안내

※ (실적입력) 각 기관별로 예방교육 실적을 입력하되, 지사, 부설 등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단위 본부에서 취합하여 일괄 입력

**일반 사항**

**Q.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10.24.신설, 2019.1.1.시행]

**Q.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A. 해당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Q.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제가 속한 기관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기관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알리오 ([www.alio.go.kr](http://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인사혁신처([www.mpm.go.kr](http://www.mpm.go.kr))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며,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 Q.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시 제재조치가 있나요?

A.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교육의 이행결과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② :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 Q. 대학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 어떤 것을 들어야 되나요?

- A.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은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입니다(대학원 대학교 제외). 다만 대학내 설치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해당되어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 (청소년 시설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 Q. 대학원대학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대학교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0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학원대학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소속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A. 공공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해당 소속 직원이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소속직원의 범위는 현 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고위직,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겸임교수 등 포함, 다만, 휴직자, 자원 봉사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

### Q. 동영상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 부분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저희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기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 A. '21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점검 강화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학대예방사업부)

**Q.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이 인터넷 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교육 결과 취합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Q. A대학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가 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B대학에서도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A 대학에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B 대학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B 대학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당해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A.**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료증 발급은 [참고2]의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트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에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Q. 2021년도 교육 안내 지침 전 이미 민간 교육 콘텐츠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작 또는 승인한 콘텐츠로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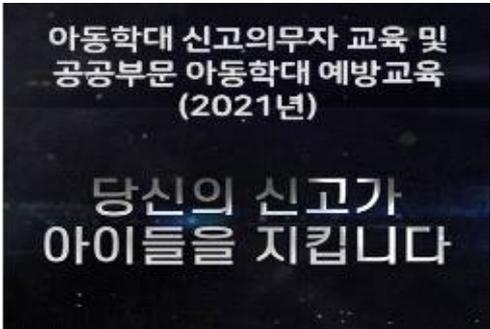
---

- A.** 작년 대비 강화된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시행·점검을 진행하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1년 1~3월에 이미 민간 콘텐츠로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동 교육실적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1.4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승인을 받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트 안내

-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②'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면서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매년 총 2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셔야 하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li> <li>2. 회원가입 및 로그인</li> <li>3. 온라인학습 클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②'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수강신청</li> <li>6. 강의 수강</li> <li>7. 수료증 발급</li> </ol> <p>*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p>

## 2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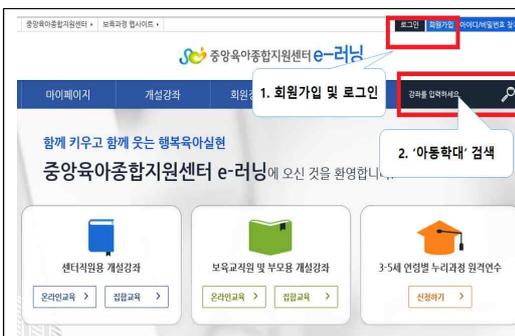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또는 ②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2시간)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위주로 수강 권장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습
5. 1~4차시(1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 4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예방)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습
  5. 1~4차시(2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꼭 수료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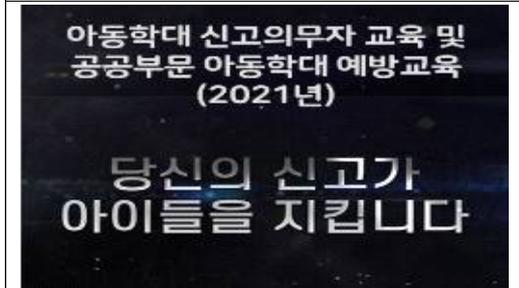
# 5

##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공동 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또는,
- \* '공동활용기관' - '공동활용신청'(각 기관 나라배움터 담당자에게 문의)을 통해 각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수강 가능



1. 나라배움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신청
  5. 1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 나의강의실 - 수료증 관리(좌측메뉴) - 수료증 출력

# 참고3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접속
2. 교육콘텐츠 클릭
3. 콘텐츠 사용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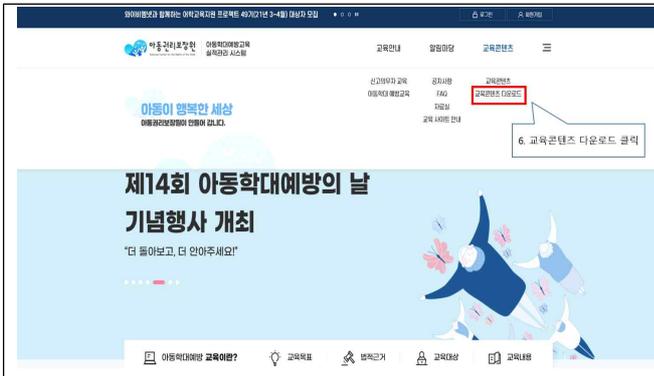
3.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PPT) 클릭



4.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5.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탑재 사이트 주소, 신청사유, 보안동의



6.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

※ 교육콘텐츠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성명 및 이메일 입력



8. 승인 상태 및 상세정보 확인



9. 상세정보 내 첨부파일 또는 다운로드 링크 별도 안내 예정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③~④ 생략